

피해자(피해자와 그 가족) 참조용 간단 매뉴얼

—

1. 가장 먼저 해야 할 일

- 1) 같은 사고 피해자들과 함께 대처한다.
- 2) 시민단체나 노조에 연락해서 도움이나 정보를 요청한다.
- 3) 책임 있는 당국(정부나 기업 등)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.

2. 시기별 대처 방법

1) 사고(재난) 직후

- ①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. (해외의 경우, 정부나 기업의 사고대책본부에 방문)
- ② 현장보존이 필요할 경우, 사진을 찍고 현장보존을 요구한다.
- ③ 담당자나 책임자에게 정확한 상황을 언론이 아닌 피해자에게 우선 전달해달라고 요구한다.
- ④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 유무 여부 확인한다.
- ⑤ 다른 피해자와 함께 협의한다.
- ⑥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칭 피해자 대책위를 만들고 대표자 등을 뽑아 당국(회사), 언론 등에 소통을 단일화한다.
- ⑦ 피해자 모임의 간단한 운영 규정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공유한다.
(공식적 입장은 함께 협의, 모임 내 협의, 의사소통 단일화 등)
- ⑧ 지원받을 수 있는 공익단체(시민사회단체)를 확인한다.(맨 아래 표 참조)
- ⑨ 전체 과정에 대한 기록과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.

2) 본격적인 구조 및 수습 단계

- ① 공익단체 등의 조언을 받아 법률지원을 해줄 법률가를 선정한다.

- ② 일터 사고의 경우 증인을 확보한다.(녹음을 한다)
- ③ 대책본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기적 브리핑과 소통을 요구한다.
- ④ 구조 및 수습 등 전 과정과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.
- 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다.
- ⑥ 정치권, 정부, 언론 등에 요구할 사항들을 피해자모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⑦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명예훼손 댓글, 가짜 뉴스, SNS 댓글 등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. 이런 경우 다른 피해자 가족들 및 지원단체들과 함께 상의하고 공식적 대응뿐 아니라 트라우마 상담 등 심리적 대응도 해야 한다.
- ⑧ 지원단체들로부터 의료 지원, 심리 지원 등 문제 해결과 피해자 건강 등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다.
- ⑨ 피해자 가족들 내에서 서로 인식 체계, 요구와 욕구가 다르기에 이견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.
- ⑩ 수습하는 정부 기관 등이 내가 기존에 알았던 시스템과 다를 수 있다. 시스템을 가급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대응에 도움이 된다.

3) 구조 구난 정리 단계

- ① 향후 계획과 백서를 요구한다.
- ②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 시 피해자들의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.
- ③ 피해자 모임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모임에서 협의한다.

4) 배·보상 단계

- ① 반드시 공익단체가 소개한 법률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.
- ② 피해자들의 내부 입장을 통일해야 한다. 서로 갈라지면 끝장이다.

5) 사고 후 일상

사고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세월이 흘러도 트라우마는 계속된다. 혼자 속으로 삭이지 말고 같은 피해자들에게 속마음을 표현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. 고통이 심해지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장례식 때
- ② 합동 분향소 철거 시점

- ③ 추모비를 세울 경우
- ④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될 시
- ⑤ 우리(피해자)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시
- ⑥ 다른 참사가 발생할 시
- ⑦ 추모 주년이 되었을 때

6) 트라우마

- ①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. 그러나 사회적·심리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.
- ② 사고 후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.
- ③ 상담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.
- ④ 지속적인 상담을 계속 받도록 한다.
- ⑤ 대개 3~5년간, 10주기 즈음으로 트라우마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.

** ‘시기별 대처 방법’의 각 단계별 내용이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단계이므로 대략의 흐름을 파악하며 활용한다.

3. 대상별

1) 당국

- ① 정확한 정보의 우선적 제공(정기, 수시)을 요구한다.
- ② 피해자와 소통하고 지원할 담당 부서 마련과 담당자 선정을 요구한다.
- ③ 피해자 가족들만의 공간을 요구한다. (회의, 휴식, 사무 가능 공간)
- ④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등의 인도적 조치를 요구한다. (피해자의 개인정보의 언론 제공은 사전 동의, 유품 등의 인도적 인계 등)
- ⑤ 경찰의 정보 수집·동향 파악이 있을 수 있다. 피해자들에 대한 조력 외 경찰의 사찰·감시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다.

2) 사고 책임 회사

- ① 정확한 정보의 우선적 제공(정기, 수시)을 요구한다.
- ② 피해자와 소통하고 지원할 담당자 선정을 요구한다.
- ③ 현장보존을 요구한다.(현장보존 확인을 위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둔다)

- ④ 피해자 가족들의 공간을 요구한다.(회의, 휴식, 사무 가능 공간 등)
- ⑤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등의 인도적 조치를 요구한다.(피해자의 개인정보의 언론 제공은 사전 동의, 유품 등의 인도적 인계 등)

3) 같은 사고 피해자

- ① 상호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정보를 우선 공유한다.
- ② 단일화된 대외 소통이 되도록 협의한다.
(피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부, 책임이 있는 회사, 언론 등에 대응하기로 협의한다.)
- ③ 피해자 협의회를 만든다.
- ④ 우선 임시 대표를 뽑는다. (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파악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정식으로 대표를 선출한다.)
- ⑤ 각자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모아간다.
- ⑥ 각자 처지가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참여할 시간 등이 다르다.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

4) 기존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

- ① 관련 단체에 연락을 한다.
- ②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한다.
- ③ 단체 활동가를 만나 피해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지원 내용 등을 협의한다.
- ④ 기존 피해자들(단체)로부터 조언을 받으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.
- ⑤ 방문한 피해자 단체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피해자들끼리 협의한다.

5) 언론

- ① 재난보도준칙에 입각해서 보도해달라고 한다.
- ② 선정적 보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.
- ③ 보도 시 피해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한다.
- ④ 피해자들에 대한 취재구조를 단일화해달라고 요구한다. 피해자 모임의 가족들 개개인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.
- ⑤ 정부나 책임 있는 단위의 사고 수습 등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요구한다.

4. 관련 단체 및 주요 정보 연락처

피해자 권리 존중을 위한 관련 단체 연락처

알림
<p>아래 관련 단체는 각 단체별 고유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됩니다.(단체명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활동 내용 참조) 따라서 각 단체의 상황과 인력에 따라 지원 가능한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양해 바랍니다. 상담 및 문의를 하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모두 노력할 것입니다.</p> <p>각 단체 연락처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. 연락처 변경이 되어 통화가 안될 경우, 4.16재단 (031-405-0416)이나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(010-4328-7722)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</p>

분류		단체명	연락처(담당)	상담 가능 분야
피해자 단체	1	4.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	사무처 • 031-482-0416	피해자모임 구성, 연대와 정부·언론에 대한 대응 자문 및 지원
	2	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	공동대표 허영주 • 010-9375-1337	피해자 연대 역할 및 피해자 대처 방법 자문
	3	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	아래 단체 중 (사)김용균재단, 노동건강연대, 민주노동총, 반올림,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,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연락처 참조	산업재해 피해자 연대 역할 ※ 각 단체들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
	4	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	전재영 활동가 • 010-8599-5441	피해자 연대 역할 등
	5	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	사무국 : 참여연대 • 02-723-5302	가습기살균제 피해 ※ 시민단체들과 피해자 단체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
노동안전단체	6	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	조승규 상임활동가(노무사) • 02-3496-5067 • 010-4322-2259	반도체 산재 피해
	7	(사)김용균재단	권미정 활동가 • 02-833-1210 • 010-3365-9404	산업 재해(피해자와 가족들의 대응방안 마련과 연대 포함)
	8	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	대표전화 • 1833-8261	방송미디어 노동자의 노동권, 안전 및 산업재해

	9	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	사무처 • 02-324-8633	노동자 건강, 직업병, 산업재해
	10	일과건강	사무실 • 02-490-2091	화학물질 피해, 노동자 건강
	11	노동건강연대	사무실 • 02-469-3976	노동자 건강, 산업재해
	12	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	사무실 • 02-2637-1656	비정규직 건강권, 노동안전
	13	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	대표전화 • 02-2670-9100	노동자 건강 및 안전, 산업재해
	14	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	대표전화 • 02-497-7888	공공부문, 운수부문, 사회서비스 등 부문 노동자 건강 및 안전, 산업재해
환경 보건 단체	15	환경보건시민센터	사무실 • 02-741-2700	석면, 가습기살균제(생활화학제품), 대기오염(미세먼지, 라돈), 전자파 등 환경보건
법률 단체	16	대한변호사협회	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(인권팀) • 02-2087-7732	법률 상담
	17	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	공익인권변론센터 • 02-522-7283 • pipc@minbyun.or.kr	법률 상담
언론 단체	18	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	김언경 소장 • 010-2203-4731 • mungclelab@gmail.com	피해자 언론 보도 문제
인권 단체	19	다산인권센터	사무실 • 031-213-2105	피해자 인권 상담
	20	인권운동사랑방	노란리본인권모임 • 02-365-5363	피해자 인권 상담,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
시민 단체	21	4.16연대	사무처 • 02-2285-0416	세월호참사 피해
	22	정치하는엄마들	사무국 • 010-2540-0420	어린이 생활안전
	23	생명안전 시민넷	박순철 활동가 • 010-4328-7722	피해자 지원단체 연계 역할
재단 법인	24	4.16재단	사무처 • 031-405-0416	재난참사 피해자 지원단체 연계 역할 재난긴급지원사업 시행

대표 집필 : 박순철 (생명안전 시민넷 활동가)